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비치대상	구분	종류	비치량
1.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	가. 5만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기름의 양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660m, 10만kl 이상 20만kl 미만인 경우에는 840m, 20만kl 이상인 경우에는 1,000m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나. 5만kl 미만 300kl 이상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기름의 양이 300kl 이상 1천kl 미만인 경우에는 200m, 1천kl 이상 1만kl 미만인 경우에는 320m, 1만kl 이상 5만kl 미만인 경우에는 460m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가. 총톤수 10만톤 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B형 또는 C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2. 제32조제1항제2호의 계류시설	나. 총톤수 10만톤 미만 100톤 이상 유조선을 계류하는 시설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 A형 또는 B형	계류할 수 있는 최대 선박길이의 1.5배의 길이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양 $20X + 50Y + 15Z = U$

비고

1.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유형	수면 위(cm)	수면 아래(cm)
A형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B형	30 이상 60 미만	40 이상 90 미만
C형	60 이상	90 이상

2. X, Y, Z, U 및 W는 각각 다음과 같다.

X: 유처리제의 양(kl)

Y: 유흡착재의 양(t)

Z: 유겔화제의 양[액상(kl), 분말(t)]

U:

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갖추어 둘 수 있는 기름의 양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값

총톤수	300이상 1천미만	1천이상 5천미만	5천이상 1만미만	1만이상 5만미만	5만이상 10만미만	10만이상 20만미만	20만이상
U	10	15	20	25	30	40	50

나.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W: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류시설에 계류할 수 있는 최대선박의 총톤수에 따라 가목의 표에 의하여 정하는 값

3. 제32조제1항제1호의 저장시설의 설치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계류시설의 관리자인 경우에는 이 표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치기준 중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